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69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5월 26일

발 의 자: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길영,  
김성준, 김원태, 남창진,  
박수빈,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목적과 관계없는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현행 조례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질서에 관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 10조의2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② (생략)<br><u>&lt;신 설&gt;</u> |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br><u>③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목적과 관계없는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제3항은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 및 행정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